

<질의 3> 임시용 건축물인 “아파트분양용 건본주택비” 비용의 건본주택 취득비용 범위에 포함 또는 제외 여부와 본 건물 취득비용으로 포함 또는 제외여부.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95. 8. 2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규정에 의하여 '95. 8.21이후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액등 모든 부가가치세액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질의 2, 3>

아파트건축물의 부속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에 관한 세금이므로 그 건축물의 건축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임시용건축물의 완공 이후 건축비용이 아닌 비품구입비, 장식물재배치비용 등은 그 임시용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세정 13407-936, 2000. 7. 24)

11.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여부

【질의사항】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원생들의 입주를 하지 못하고 이를 의료기관(유료 노인성치매환자 진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

1. 위 질의사항과 같은 경우에 당초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의 의료업이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료복지시설이어야 하는지?
2. 의료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